

아동권리 이슈포커스 -16호-

Children's Rights Issue Focus

발행인: 양진옥 발행처: 굿네이버스 발행월: 2019년 8월

굿네이버스 아동권리 이슈포커스는 주목할 만한 아동의 현안에 대해 아동권리 관점의 이해를 제공하고 아동권리 보장을 위해 필요한 인식을 공유하는 한편, 정책 및 제도, 인식, 사회문화 전반에 걸친 개선을 촉구하고자 발간되었습니다.

아동과 참여 듣고, 존중하고, 함께하기



Purpose

이번 이슈포커스에서는 아동권리 실현을 위해 중요한 원칙인 “아동 참여”의 의미를 재고하고, 실질적인 아동 참여 활성화를 위한 우리 사회의 과제를 고민해보고자 한다.

Key message |

아동 참여란, “아동이 삶의 주체가 되어 아동의 삶과 관련 있는 모든 영역에서 의견을 표명하며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를 통해 변화를 이끄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아동의 참여권을 보장하고자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을 미성숙한 존재라고 여기는 인식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 남아 있고 참여 기회 및 정보 부족 등의 제약적 조건들로 인해 아동 참여는 활성화 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아동은 성인과 마찬가지로 스스로의 고유 권리를 가지며 이 권리의 주체적 행사자이다. 권리의 주체자인 아동이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누려야 하는 것은 ‘마땅하고 당연한 권리’이다. 아동의 권리 실현에 있어 아동 스스로의 의견과 생각을 정책과 제도 개선 과정에 반영하는 것은 중요하다. 아동의 권리는 아동의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서 더욱 실현되고 강조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아동 참여를 보장하는 실질적인 방안들이 강구될 수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과제는 다음과 같다.

-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고 반영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 아동이 주체적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과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아동의 역량 강화를 도와야 한다.
- 아동 의견 청취를 위한 실질적 제도 조성 및 아동의 정책 참여가 확대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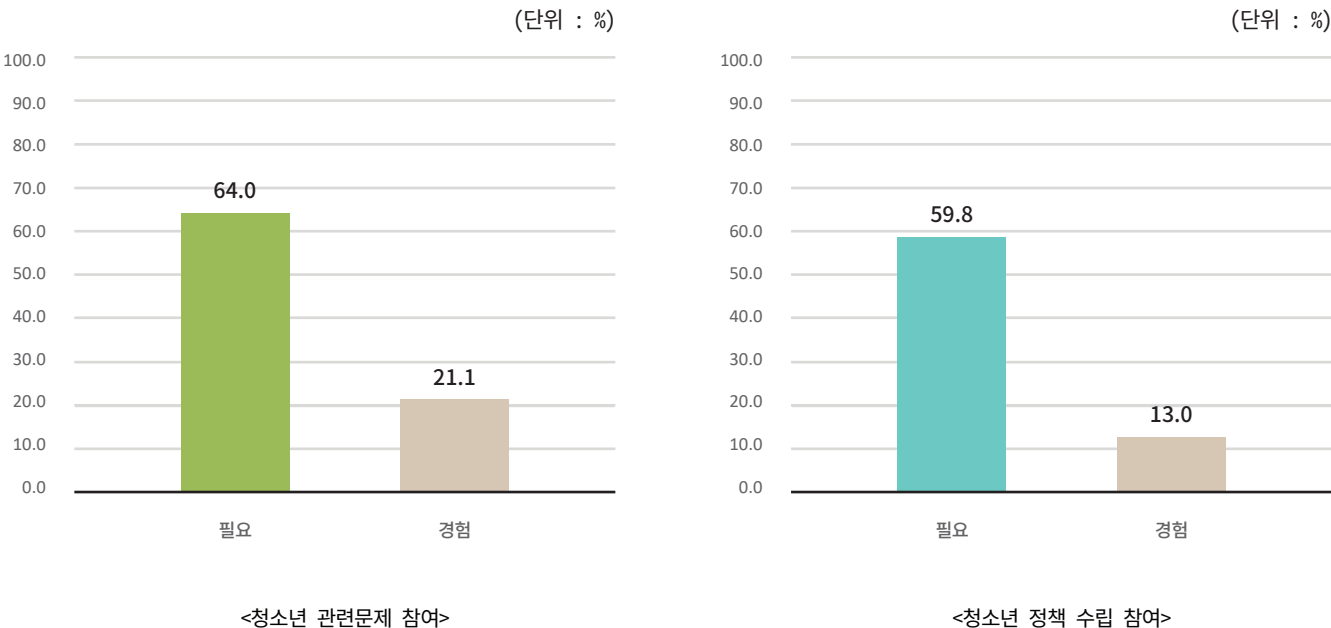
Situation |

지난해 6월, 제7회 전국지방동시선거가 진행되던 날, 또 하나의 색다른 선거가 실시됐다. 이 선거는 바로 예비 유권자인 만 19세 미만 청소년들의 선거였다. 전국에서 약 4만 5천여 명의 청소년이 교육감을 비롯해 광역 시장 및 도지사 모의투표에 참여했다. 이날 투표에 참석한 한 청소년은 선거 참여의 의미에 대해, “우리가 재미나 호기심만으로 모의 투표를 한 것이 아니라 18세 참정권을 실현하기 위한 청소년 운동의 일환으로 이 일을 했다”라고 설명했다(직설, 2018.6.22.일자). 사회, 정치, 경제 등 다분야의 급속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현 시대에서 우리 청소년들의 주체적인 권리 실현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날의 선거에 전국의 모든 청소년이 참여한 것도 아니고 투표 결과가 지방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도 아니었지만, 이날 청소년들의 선거 참여는 ‘참여를 통한 아동 권리 실현’이라는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 사회에 던진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청소년의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은 어느 정도이고 이들이 느끼는 참여의 필요성은 얼마나 강할까? 이는 최근 발표된 2017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의 결과를 통해 실마리를 얻을 수 있다. 해당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청소년 관련 문제나 정책 수립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한 문항에 ‘가끔 또는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한 청소년의 비율은 64.0%로 나타났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정책이나 수립 과정에의 참여’가 ‘가끔 또는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한 청소년의 비율은 59.8%로 나타났다. 과반수이상의 청소년들이 본인들과 관련된 문제나 정책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청소년들이 실제 정책에 참여했던 경험 비율을 살펴보면, 관심과 필요성의 인식 비율에 훨씬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소년 관련 문제에 참여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비율은 21.1%였고, 정책 수립에 참여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비율은 13.0%로, 관심이나 필요성 수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설문에 참여했던 청소년 10명 중 두 명 내외 정도의 청소년만이 실제 참여 경험을 보고하고 있어,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정책 참여 인식과 실천 간의 간극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청소년 참여의 필요성과 실제 경험]



출처 : 청소년종합실태조사(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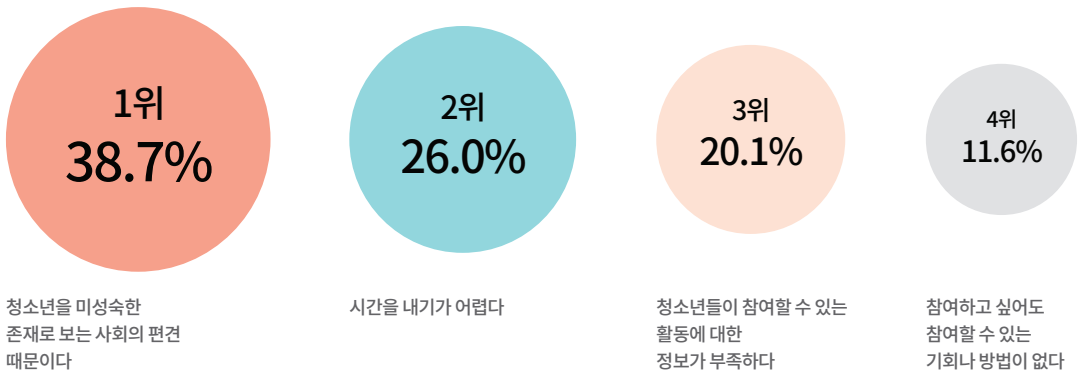
한편, 아동·청소년의 참여를 방해하는 요인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실태조사도 있었는데, 2018년 한국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보는 사회의 편견’이 38.7%로 압도적으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는 ‘시간을 내기 어렵다’, ‘참여할 수 있는 활동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참여할 수 있는 기회나 방법이 없다’ 순으로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먼저, 아동·청소년의 참여를 방해하는 요인 중 ‘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보는 사회의 편견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는 것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아동은 성인의 소유물이 아닐뿐더러 성인과 같이 고유의 주체적인 권리를 가진 독립적 인격체이기에 이 권리를 주체적으로 실현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많은 성인들은 여전히 아동을 미성숙한 존재로 여기거나 스스로의 의견이 온전하지 않아 성인의 의사결정을 따라야 하는 존재 등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편견은 가정, 학교, 지역사회 등 아동을 둘러싼 환경 체계에 남아 있어 이 체계 내에서 아동들은 성인의 편견에 여과 없이 그대로 노출된다. 아동을 존엄한 인격체로 인식하고, 스스로 사고하고 이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존재로 존중하는 인식으로의 변화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아동의 참여권 확대는 기대하기 어렵다.

인식의 전환만으로 아동 참여의 확대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아동·청소년의 참여를 방해하는 두 번째 높은 비율인 ‘학업으로 인한 시간 부족’은 우리나라의 교육 중시 열풍과 맞물려 더욱 정교한 정책적, 제도적 개선 방안을 필요로 한다. 아동·청소년에게 교육의 권리가 있지만 지금의 우리나라에선 교육권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있다. 학년이 증가할수록 이러한 강조는 보다 심화되어 아동의 참여 기회는 더욱 제한된다. 다양한 참여와 적극적 의견 개진을 통해 아동이 더욱 역량을 강화할 수 있고 주체적인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교육권만이 아닌 참여권을 함께 강화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현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인식과 제도 개선이 사회 전반에서 병행될 수 있어야 한다. ‘참여 의사가 있어도 정보가 부족하거나, 기회나 방법이 없다’는 아동·청소년의 응답 비율이 31.7%로 나타난 결과 역시 아동·청소년의 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들이 실효성 높게 계획되고 실행되어야 함을 주지시킨다.

현재 정부 및 민간 기관을 통해 아동에게 제공되고 있는 참여 기회는 일부 아동들로 제한된다. 왜냐하면 참여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활동 자체의 특성 상 많은 아동을 수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다양한 참여 기회를 통해 더욱 많은 아동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이러한 참여 기회에 대한 정보를 아동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학교 및 지역사회 아동 관련 기관들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장려하는 방안들이 책임 있게 마련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비단 참여 활동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아동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을 상시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다. 최근 다양한 형태로 아동·청소년의 참여가 확대되고 있으므로, 이를 담아내고 공유할 온·오프라인 형태의 창구나 아동·청소년들의 참여활동을 지원할 다양한 전문가 배치, 이들의 활동을 지원할 예산 확대 등도 필요하다.

[청소년 참여의 방해요인]



출처 : 한국아동·청소년인권실태(2018)

Children's rights issues | 아동권리 이슈 - “아동참여,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아동권리의 주체로서 아동의 참여권에 대한 인정

역사적으로 볼 때 각 시대나 문화마다 아동을 바라보는 관점이 상이했으며, 어떻게 대우하고 무엇을 성취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선입견도 존재했다. 이러한 선입견으로 인한 어른의 기준과 잣대로 아동의 역량을 판단하고, 아동이 할 수 있는 일을 제한하거나 가치롭게 여기지 않기도 했다. 비교적 최근까지도 우리 사회는 아동을 잘 돌보고 지도할 대상으로만 여겼을 뿐, 아동이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말하고, 자신의 일이나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여하고 기여할 수 있다는 데는 관심을 가지지 못하였다.

하지만 유엔아동권리협약(이하 ‘협약’)에서 바라보는 아동에 대한 관점은 기존의 전통적인 관점과는 차이가 있다. 협약 제12조에서는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가 있으며, 아동의 견해는 존중되어야 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협약에서는 아동을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는 아동을 “진화하는 역량(evolutionary capacity)”을 가진 존재로 보는 인식과 관련이 있다. 이 인식은 아동의 발달과정에 따른 미성숙함과 취약성으로 인해 성인의 보호가 필요할 수 있지만 이와 동시에, 아동은 자신을 삶의 능동적인 주체자로 인식할 수 있고 스스로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할 수 있으며 능동적 의사결정을 가질 수 있기에 이러한 아동의 능력은 성인들의 그것과 동등하게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동은 자라나면서 점진적으로 견해를 형성하고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능력을 발달시켜 나간다. 발달과정에 있는 아동의 견해는 형태적으로 온전하고 완벽한 구조물을 띠진 않을지 모르지만, 내용적으로 아동에게 더욱 민감하며 의미 있는 정보를 담아낼 수 있다. 이것이 아동권리의 주체로서 아동의 참여가 더욱 확대되어야 할 이유이다.

또한 협약 제12조에서 아동의 견해는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정당한 비중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아동 참여를 제한해야 함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아동 참여를 위해 아동의 역량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적절한 반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며, 아동의 견해를 형성하는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적 지지와 자극이 제공되어야 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일반논평 7호를 통해 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언어적 발달이 완성되지 않은 영유아기 아동의 경우 의견을 간과하거나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을 지적하면서 영유아기 아동이 언어적 표현은 미숙할 수 있지만 울음, 웃음, 표정 등 다양한 비언어적 표현으로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이에 대하여 존중하며 이들의 이야기를 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하였다.

결국 아동의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원칙은 아동이 권리를 누리고 행사하는 주체임을 인식하고, 아동이 자신의 수준에 맞게 생각과 감정 그리고 의사를 표현하고 있음을 인정하며, 이들의 참여를 장려하고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동의 의견은 진지하게 청취되어야 하고, 중요하게 받아들여지고 고려되어야 한다.

실질적인 아동참여를 위해서는

참여에 대한 정의는 초점과 범위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에 따라 다양할 수 있는데, 협의의 개념은 특정 사안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것으로 한정할 수 있지만 광의의 개념으로 보면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영역에서 주도적이고 능동적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아동 참여와 관련한 정의를 살펴보면, Hart(1992;1997)는 ‘개인 및 공동체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공유하는 과정’으로 보았고, Checkoway(1998)은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 개입하는 것’, 최창욱과 김승경(2010)은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과정’이라고 하였다. 여러 학자들의 정의를 살펴볼 때, 아동 참여는 ‘의사결정에의 참여’이며, 아동 참여권의 핵심은 아동이 자신에게 영향을 끼치는 일에 의사를 표명하고 성인은 이런 아동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함으로써 의사결정과정을 공유하는 것(강현아, 2006)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참여의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아동에게 참여를 위한 선택권과 권한이 부여되고 있는지, 아동의 참여가 의사결정과정과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일 수 있다.

아동 참여의 질, 참여의 수준이 어떠한지를 살펴보는 것 또한 의미가 있는데, Hart는 이 과정에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Hart는 아동의 참된 참여(genuine participation)를 강조하면서 아동이 참여의 선택권을 가지고 있고, 참여의 의미와 목적을 알고 있으며, 의사결정 과정이 공유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아동 참여 수준을 나타내는 ‘아동참여 사다리(A Ladder of Children's Participation)’ 모델을 통해 아동의 주도권과 개입 정도에 따라 8단계를 제시하였다.

[Hart의 아동참여 사다리 모델]

8	아동주도로 성인과 의사결정을 공유하는 단계	아동이 실질적으로 의사결정권을 가지거나 영향을 행사하고 성인에게 의사결정을 공유함
7	아동이 주도하고 감독하는 단계	아동이 주도적으로 활동이나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성인은 아동의 활동을 관찰하거나 지지하는 역할을 수행함
6	성인주도로 아동과 의사결정을 공유하는 단계	성인에 의해 활동이 주도되지만 의사결정 과정에 아동의 참여가 이루어짐
5	성인이 정보를 제공하고 협의하는 단계	성인에 의해 주로 활동이 운영되지만 아동은 그 과정을 이해하고 자신의 생각에 대해 성인에게 조언하고, 아동의 의견은 비중있게 고려됨
4	성인이 지시하는 정보 제공받는 단계	성인주도로 활동이 운영되지만 아동에게 구체적인 역할이 부여되며, 아동은 참여 방법과 이유에 대한 정보를 알며, 아동의 역할과 그 의미를 알고 있음
3	명목상 단계	아동은 의사소통 주제나 방식에 대한 선택권이 없으며,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기회가 제한적으로 주어짐
2	장식 단계	아동은 자신이 참여하는 활동에 대한 이해가 적고 자신의 의사를 말할 수 있는 기회 없이 장식적으로 동원됨
1	조작 단계	아동은 자신이 참여하는 활동에 대한 이해없이 성인이 지시한 사항을 일방적으로 수행함

아동참여 사다리는 참여 최고수준의 단계로 도달하여야 하는 수직적인 구조를 제시하고, 복합적인 고려 없이 참여의 단계를 일반화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지만(천정웅, 2014), 참여의 수준을 설명함으로써 참여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제공하였고, 의미 있는 참여에 대해 재고하고 참여 수준을 점검해 볼 수 있도록 한다. 아동의 참여는 여러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아동참여 사다리의 1~3단계처럼 아동이 참여는 하지만 아동에게 활동의 이유나 과정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고, 의견을 표현할 기회가 없거나 제한적으로 주어지며 성인의 지시사항을 수행하는 수준은 진정한 의미의 아동참여라고 할 수 없다. 이는 성인중심적(adultism)으로, 기대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아동을 이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진정한 아동 참여를 위해서는 참여의 취지와 방법, 아동의 역할과 그 의미에 대해서 알고 있으며, 아동의 의견 표현의 기회가 보장되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비중있게 고려될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의사결정 과정에 아동의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하며, 아동이 보다 많은 의사결정권을 가지도록 해야한다.

한편, 아동의 참여는 가능하면 높은 수준의 주도성과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겠지만, 유의할 점은 상황이나 연령에 따라 참여 수준이 달라질 수 있으며, 언제나 높은 단계를 지향해야 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아동의 참여를 최대한 촉진할 필요가 있지만, 아동은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지 않을 자유(일반논평 12호 para.22)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동의 자발성과 선택이 존중될 수 있도록 아동 참여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아동 참여를 위해 고려해야 할 기본요건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일반논평 12호에서 아동 참여를 보장한다고 하면서 형식적으로 참여 기회를 제공하거나 성인의 의도대로 발언하게 하거나 아동의 참여가 아동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행위 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실질적인 참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단발적 행사가 아니라 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아동 참여의 의미 있는 이행을 위한 기본 요건을 제시하였으며, 이는 아동이 자신의 견해를 표현하고 참여하는 모든 과정에서 준수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아동 참여의 기본 요건은 투명성과 정보제공, 자발성, 존중, 관련성, 아동친화, 포괄성, 직업훈련, 안전, 책무성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투명성과 정보제공	· 아동 참여에 있어 윤리적 실천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 아동이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정당한 비중을 부여받을 권리와 참여의 방법, 범위, 목적, 잠재적 영향력에 관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 참여의 목적과 목표는 아동과 합의되어야 한다.
자발성	· 아동의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선택권은 아동이 가지며, 참여하지 않을 권리와 참여를 철회할 권리가 있음을 아동에게 알려야 한다. 이 과정에서 외부의 압력이 있어서는 안 된다.
존중	· 아동의 생각과 견해는 존중받아야 하며, 자신의 입장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 아동이 참여를 통해서 아동이 속한 공동체에 기여하는 사례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강화해야 한다.
관련성	· 아동참여의 이슈들은 아동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아동의 실제 생활과 연관이 있어야 하며, 아동이 자신의 지식과 능력을 이용할 수 있는 문제여야 한다.
아동친화	· 아동참여가 이루어지 제반 환경과 방식은 아동의 역량을 고려하여 조성되어야 한다. · 아동이 충분히 준비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충분한 시간과 자원이 지원되어야 한다.
포괄성	· 아동참여의 기회는 동등하게 주어져야 하며, 참여의 실행과정 속에서도 차별의 문제가 나타나지 않아야 한다.
직업훈련	· 성인은 아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아동 역량에 대한 이해, 아동과 협력하는 방법, 의사소통 기술 등을 훈련해야 한다.
안전	· 성인은 아동학대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 아동이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것에는 위험이 따를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 아동 참여가 아동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해야 하며, 아동보호를 위한 적절한 전략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책무성	· 아동참여를 실행한 후에는 반드시 전 과정에 대한 평가와 후속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 아동은 자신의 참여가 어떠한 영향이나 결과를 가져왔는지 피드백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으며, 적절한 경우 아동이 후속 조치, 평가에 아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 본 내용은 일반논평 12호와 O’Kane(2013)의 내용을 토대로 정리한 것임

Recommendations |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고 반영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최근 뉴스(EBSNEWS, 2019년 7월 17일자)에 미국의 7살 ‘벤저민 볼’이라는 아이가 소개되었다. 이 아이가 지난 겨울 한 아웃도어 매장에 있는 카페에 들렀는데, 음료를 마시기 위해 종이빨대를 찾았지만 카페에 플라스틱 빨대만 있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고, 평소 바다 거북이와 해양 생태계에 관심이 많던 벤저민은 회사 대표에게 편지를 보냈다는 것이다.

“저는 바다 거북이의 친구예요.
제 친구들을 보호하고 싶어서 편지를 써요.
매년 1억이 넘는 해양 동물이
플라스틱으로 목숨을 잃어요.
바다 거북이는 저와 생태계에 중요해요.
가능하다면 플라스틱 빨대 대신에
종이 빨대를 사용해주세요.”

- 미국에서
7살 ‘벤저민 볼’



그리고 편지를 받은 회사대표는 다음날 바로 답을 보냈고, 몇 주 뒤 회사의 모든 매장에서는 플라스틱 빨대 대신에 100% 분해되는 빨대를 사용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이었다. 어린 벤저민의 용기 있는 행동이 변화의 시작을 만들어 낸 것이다.

그런데 만약 이 때, 벤저민의 용기 있는 행동을 어른이 무시했다면 그 변화는 시작될 수 있었을까?

앞서 살펴보았던 연구결과와 같이 우리 사회는 여전히 아동을 미성숙한 존재로 전제하고 있다. 아동들 또한 아동 참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주된 이유로 이러한 사고방식을 꼽고 있다. 아동의 목소리를 듣고 함께하기 위해서는 먼저, 아동을 미성숙한 존재가 아닌 자신의 의견을 형성할 능력이 있는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고, 그 목소리를 존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고 반영할 수 있는 환경은 아동과 가까이 있는 가정, 학교, 지역사회에서부터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굿네이버스의 연구(2018)에 따르면, 지난 1년간 가족회의, 학급회의에 참여했다고 응답한 아동의 비율이 50%대를 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은 아동이 자신과 관련된 일에 대해 의견을 이야기하고 존중받는 경험을 하는 첫 번째 통로이다. 아동은 가정 내에서 아동이 자신과 관련된 일에 대해 의견을 이야기하고 존중받는 경험을 할 수 있어야 한다. 학교에서도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결정되는 학급회의 또는 교사와 학생 간의 개방적인 소통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학교정책 등에 대해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주어야 하였다. 이렇게 가정과 학교에서 참여문화가 성숙되면, 지역사회, 국가차원에서도 아동에 대한 참여가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정익중, 2016).

어렸을 때부터 훈련되지 않고 존중받아본 경험이 없는 아동들이 시간이 흘러 성인이 되었을 때, 갑자기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진 국민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어릴 때부터 표현과 참여의 자유를 보장받고 존중받는 경험을 한 아동들이 훗날 성장하여서 본인뿐만 아니라 공동체와 사회적 문제에도 관심을 가지고, 보다 건강한 방식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성숙한 시민으로서 그 역할을 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아동이 주체적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과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아동의 역량 강화를 도와야 한다.

아동 참여 활동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권리주체자인 아동의 역량강화이다. 역량강화는 아동이 권한과 능력을 갖고 이에 대한 책임을 확대하여 아동이 가진 잠재 능력과 창의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역량강화는 아동의 개인적인 측면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자신감을 스스로 키워가도록 하며,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힘이기도 하다. 진정한 참여가 가능하려면 약자인 아동이 아동의 권리를 주장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아동의 성장 발달 시기를 충분히 고려하여 연령에 맞는 적절한 지원과 개입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아동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영향력을 행사함에 있어서 아동들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지만, 아동의 다양한 참여활동 경험 자체가 아동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음도 연구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굿네이버스의 연구(2017)에 따르면, 동아리, 캠페인, 자원봉사, 정책참여 등의 활동경험이 있는 아동들이 활동 경험이 없는 아동들에 비해 다양한 상황에서 감정, 생각, 행동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책무를 책임감 있게 임하는 능력(자기관리능력), 대인간 상황에서 자신을 포함한 사람들 간의 감정, 사고, 행동을 이해하고 그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적절한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사회적 상호작용 역량), 지구촌 문제에 관심을 갖고 이해하며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세계시민 역량)이 높게 평가되었다. 아동 참여의 확대와 실천을 위해서 역량강화가 중요하네, 참여활동 자체는 아동의 인성과 역량개발에 중요하다. 그러므로 아동의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실제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아동들이 이를 통해 주체성을 강화할 수 있는 실제적 제도와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강구되고 뒷받침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아동 의견 청취를 위한 실질적 제도 조성 및 아동의 정책 참여가 확대되어야 한다.

세계 각국에서는 아동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먼저 영국에서는 비영리조직으로 청소년의회가 구성되어 청소년들이 그들의 필요와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 활동에 영국 의회나 부처 장관, 정치인과의 만남도 포함되는 등 적극적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영국 아동위원회의 ‘테이크오버 챌린지(takeover challenge)’ 활동은 하루 동안 아동·청소년들이 조직과 기업들로 하여금 그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행사로, 해마다 많은 기관과 아동들의 참여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핀란드에서는 아동과 청소년이 자신들의 지역 예산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참여예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국가에서 수행하는 참여활동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적극적인 참여를 강조하고 아동의 의견이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로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신원영·길보라, 2018).

우리나라 또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준수하고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아동·청소년참여기구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법적인 근거가 있는 아동·청소년참여기구로는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특별회의가 있다. 이외에도 각 지자체별로 조례에 근거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위원회 등이 조직되어 운영되고 있다. 또한 법적인 근거는 없지만, 국회차원에서 설치하여 운영 중인 ‘대한민국 어린이국회’와 한국아동단체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한민국 아동총회’가 있다. 이처럼 국가적으로도 아동 정책의 실질적 수혜자인 아동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제도 및 정책이 마련되고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아동참여기구 대부분은 정해진 일정 동안만 토론하고 정책을 건의하고 있으며, 실제적인 정책반영은 미비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다(유엔아동권리협약 한국NPO연대, 2018).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은 이미 우리나라의 유엔아동권리협약 1~4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권고사항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 법률상 절차와 사회적 태도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있어 아동의 의견을 고려하지 않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아동에게 영향을 주는 모든 결정과정에 아동의 의견이 고려되도록 법개정 및 교육과 정보 제공, 정기 모니터링을 권고하고 있다(정병수, 2016).

결국 실질적인 아동참여를 위해서는 아동의 참여의 과정 속에 의사결정권을 갖고, 그 영향력을 펼칠 수 있도록 현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또한 앞선 연구결과에서 살펴보았듯이 참여 활동에 대한 정보를 부족으로 참여로 이어지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참여 활동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온·오프라인 형태의 정보제공 창구나 아동청소년들의 참여활동을 지원할 다양한 전문가 배치, 이들의 활동을 지원할 예산 확대 등이 필요할 것이다. 아동참여가 형식적·명목적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아동의 의사가 충분히 고려되고 반영되어야 할 것이며, 아동에 의한 자율적 운영과 참여 범위는 더 확대되어야 한다. 이러한 참여의 과정에서는 반드시 아동과 의사결정 과정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아동의 권리 수준을 연구한 굿네이버스 대한민국 아동권리지수(2018)에 따르면 우리나라 아동권리지수 평균은 71점 정도에 머무르고 있는데, 그 중 참여권은 평균 57점 정도로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에 비해 그 수준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도시에 비해 농어촌·중소도시 지역의 아동들의 참여권 경험 정도도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동들의 전인적 발달 및 지역별 참여권의 불평등 해소를 위해 지역 내 다양한 정책 참여 활동기회와 기구를 설치하고 아동 참여 기회를 전국적으로 확대해야 할 것이다.

올해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제정된 지 30년이 되는 해이다. 또한 정부는 지난 7월 포용국가 아동정책에서 ‘아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부’를 세부 추진과제로 발표하면서 아동의 의견이 반영된 정책을 결정하고 아동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추진계획을 담아낸 바 있다. 아동권리의 의미와 가치,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우리의 관심과 노력, 국가와 사회의 책무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하고 사회적 인식 개선과 아동들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과 제도가 마련되어 실현되도록 더욱 더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 강현아(2006). 청소년참여권 현황과 지표개발. 한국청소년개발원.
- 국가인권위원회 편역(2006). 유엔 인권조약 감시기구의 일반논평 및 일반권고-아동권리위원회.
- 백혜정·임희진·김현철·유성렬(2017). 2017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여성가족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신원영·길보라(2018). 아동과 참여: 듣고, 존중하고, 함께하기. 굿네이버스.
- 유엔아동권리협약 한국NPO연대(2018). 제5·6차 유엔아동권리협약 민간보고서. 유엔아동권리협약 한국NPO연대.
- 이봉주·김동일·신원영(2017). 4차 산업혁명 시대와 아동의 인성 역량. 굿네이버스.
- 이봉주·장희선·신원영(2018). 2018 대한민국 아동권리지수. 굿네이버스.
- 정병수(2016). 아동참여권 실현을 위한 노력: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을 기반으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동광, 2016(111), 33-49.
- 정익중(2016). 참여권 확보를 위한 아동투표권에 대한 소고,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동광, 2016(111), 3-30.
- 천정웅(2014). 청소년참여론. 양서원.
- 최창욱·김승경(2010). 청소년 권리증진을 위한 참여활동 방안 연구. 여성가족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최창욱·황세영·유민상·이민희·김진호(2018).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한국아동·청소년 인권실태 2018 총괄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Checkoway, B. (1998). Involving young people in neighborhood development.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20, 765-795.
- Hart, R. (1992). Children's Participation: From Tokenism to Citizenship. New York: UNICEF(Innocenti Essays, 4).
- Hart, R. (1997). Children's Participation: The Theory and Practice of Involving Young Citizens in Community Development and Environmental Care. New York: UNICEF.
- O'Kane, C. (2013). Children's Participation in the Analysis, Planning and Design of Programmes. London: Save the Children.
- 직설(2018). "5만 청소년이 직접 뽑은 지방선거 당선자들", 2018년 6월 22일.
- EBSNEWS(2019).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멈춰주세요", 2019년 7월 17일.